

# KBCSD 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 :

## EU 「청정산업딜」과 「오mnibus 규제 간소화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 04. 07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유례없는 고관세 정책과 더불어 EU의 환경·안보 비관세 무역조치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탄소중립과 AI 시대의 녹색 첨단산업 경제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자국의 제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산업 성장전략을 재편하고 관련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기 집행위(2024~2029년)의 핵심 산업 로드맵으로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과 「오mnibus 규제 간소화 개정안(Omnibus Packages)」이 EU 역내 제조역량 강화와 탈탄소화의 양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 성장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U 산업부문 전력 소매가격이 미국의 2.2배, 중국의 2배, 일본의 1.2배 높은 상황에서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주요 경제국 대비 과도한 규제부담으로 기업들의 생산거점이 역외로 이동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청정산업딜」은 구체적인 성과지표(KPI)와 전략 이행 타임라인, 그리고 에너지집약 산업에 투입될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의 재원을 통해 EU 제조업의 부흥과 청정전환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우선, EU 경제 전반의 전기화율(electrification rate)을 현재의 21.3%에서 2030년 32%로 확대한다는 KPI 목표하에,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가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EU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권을 존중하여 원전 및 SMR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해외 LNG 프로젝트 대출 혜택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청정에너지·기술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청정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부문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공급 확보를 통해 EU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EU 시장에서 청정기술 제품의 EU産 핵심부품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KPI 목표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조달 기준에 '지속가능성' 과 'EU産 우대' 등 비가격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EU에서 생산된 청정제품 수요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핵심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일환으로는, 유럽 Remanufacturing 시장의 순환 잠재력 가치를 현재의 310억 유로(한화 50조원)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로 상향한다는 KPI하에, 'EU 핵심원자재 센터' 를 신설하여 기업을 대신하여 원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블랙매스 등 EU 내 핵심원자재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에서 설비 소유권과 EU産 부품 사용, EU 기반 인력 채용, 공동 투자 또는 지식재산권 이전 등의 요구 조건을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EU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인바, EU 진출 한국기업의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청정산업딜」 과 함께 발표된 「온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 은 EU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규제인 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② 공급망 실사지침(CSDDD), ③ EU 탄소노미, ④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2029년까지 최소 25%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요건이 간소화되어 EU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들의 규제대응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업의 재무 및 영향 중요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원칙' 을 그대로 유지하고, CBAM 적용 분야를 기존의 6개 품목에서 향후 다운스트림 제품, EU ETS(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된 기타 산업, 간접배출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등 EU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조와 방향이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EU의 이번 규제 간소화 개정안을 계기로, 지속가능성 이슈를 단순한 규제 대응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으로 재점검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이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자국 제조산업 보호와 규제를 명분으로 한 글로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현명하게 대처할 국가 차원의 장기적 성장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EU 등이 전략적 청정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국내 산업이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는 원전 및 SMR 밸류체인, LNG 산업인프라, 차세대 배터리/ESS, 스마트 전력망 등 첨단 제조산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전략 추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환경규제와 자국중심 제조부흥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산업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R&D 지원과 더불어 기업 혁신을 유도할 규제 합리화 및 자율성 부여, 국내 기술의 국제 규범화를 위한 외교 역량이 선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와 국제표준의 새로운 질서에 회원사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KBCSD는 오는 6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대응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Scope 3 표준화 및 탄소 데이터 시스템 구축 전략 등을 정부, 글로벌 우수기업, WBCSD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KBCSD CEO 지속가능경영전략 보고서」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청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범을 내재화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유첨: EU 「청정산업딜」과 「옵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사무총장 홍 현 중

# EU 「청정산업딜」과 「옴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 추진 배경

- 작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2기 EU 집행위(2024~2029년)가 출범한 가운데, 2029년까지의 EU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산업정책을 규정할 청정산업 로드맵인 「Clean Industrial Deal(이하, 청정산업딜)」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입법 개정안인 「Omnibus Packages(이하, 옴니버스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발표되었음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i) 높은 에너지가격으로 인한 EU 기업 부담 가중, (ii) 주요 경제국 대비 과도한 규제부담, (iii) EU 역내 제조산업 부진으로 청정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투자자금이 역외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의 양립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였음

### < 「청정산업딜」 및 「옴니버스 개정안」 추진 배경 >

높은 에너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EU 내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EU 기업들과 미국/중국/일본 기업들 간 생산성 격차 확대</li> <li>· EU 산업부문 전력 소매가격이 미국의 2.2배, 중국의 2배, 일본의 1.2배 높은 상황 (2024년 2분기 기준)</li> <li>·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의 높은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최근 생산감축 혹은 해외로 생산거점 이동</li> </ul>
과도한 규제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연방의회가 2019~2024년 동안 약 3,500개 법안 및 2,000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반면, 동 기간 EU는 13,000개의 법률 제정</li> <li>· 타국 대비 EU 기업들이 부담하는 행정적, 규제적, 보고 의무가 과도하다는 우려와 함께, 기업 규제 완화 및 혁신을 촉진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대한 산업계 요구 증가</li> </ul>
제조산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대 초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0대 기업 중 EU 기업이 41개에서 15개로 축소되는 등 EU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증가</li> <li>· EU의 '탈탄소화'가 사실상 '탈산업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EU에서 제조된 청정제품·기술 수요 확대를 통해 역내 청정 제조산업 부흥 촉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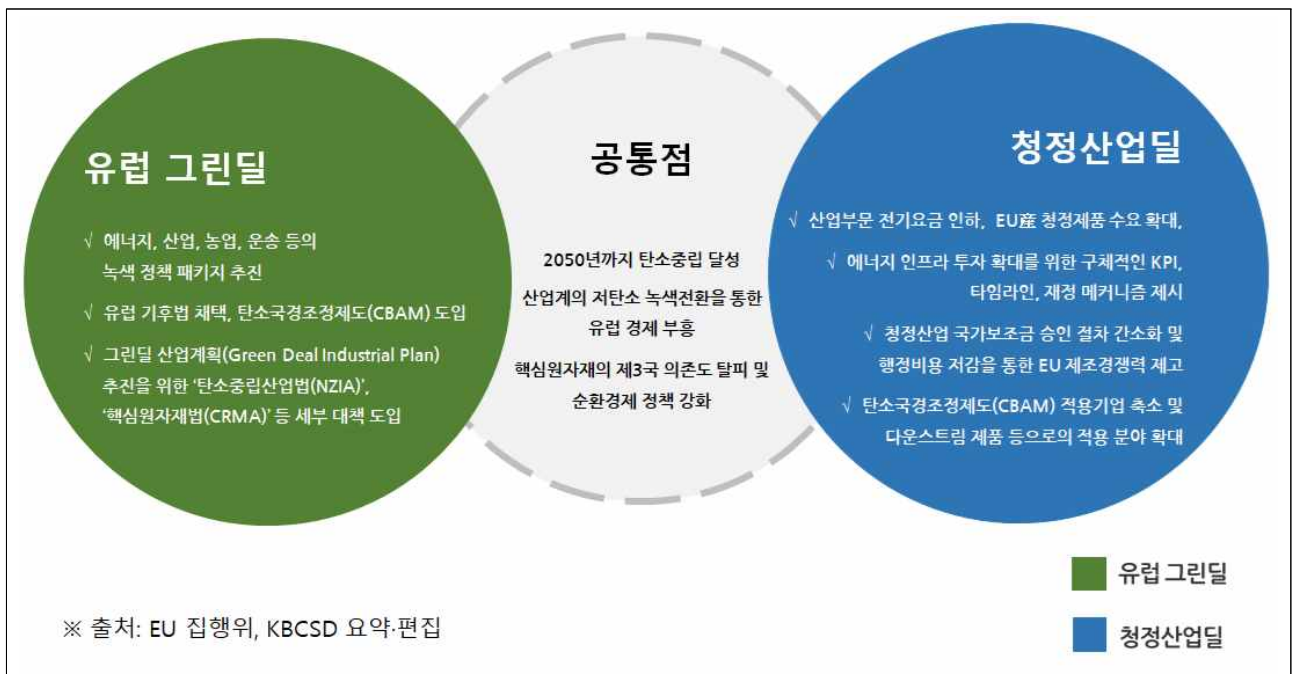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2. 「청정산업딜」 주요 내용

### □ 의미 및 기대효과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은 폰데어라이엔 2기 EU 집행위의 핵심 산업 로드맵으로서, 1기의 대표적 기후정책 로드맵이었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초를 유지하는 동시에, 에너지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1000억 유로 이상의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EU 제조업의 청정에너지·산업 전환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성장전략임
  -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재산업화(reindustrialization), 혁신(innovation) 동시 지향
- 「청정산업딜」은 특히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성’, ‘EU産 청정제품 수요 촉진’,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강화’ 등 각각의 핵심 정책 별 구체적인 성과지표(KPI)와 정책 이행 타임라인, 재정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즉, 「청정산업딜」은 「유럽그린딜」을 보완하여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탈탄소, 녹색전환 행동계획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여 EU의 청정 제조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부흥책이라 해석할 수 있음

### < 「유럽그린딜」과 「청정산업딜」 비교표 >




- 「청정산업딜」을 통해 2040년까지 연간 2,600억 유로(한화 410조원)의 에너지비용을 저감함으로써 EU 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EU 집행위는 기대하고 있음

## □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성

**에너지집약 산업을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

**KPI :** (i) EU 내 청정 에너지 시스템 도입으로 2025년 한해 450억 유로, 2040년까지 연간 2,600억 유로의 에너지비용 절감  
 (ii) EU 경제 전반의 전기화율(electrification rate)을 현재의 21.3%에서 2030년 32%로 확대  
 (iii)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매년 100GW씩 설치

**내용:**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채택을 통해,  
 (i)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을 개편하여 에너지 전기화(electrification) 유도 및 화석연료 세금감면 폐지  
 (ii) 해외 LNG 프로젝트 투자자에 대한 우대 대출을 제공하여 EU 역내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 완화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청정산업딜」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은 'EU의 에너지집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접근'이며, 이를 위해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 (저렴한 에너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천연가스 공급이 무기화(weaponization)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럽이 경험하면서, 해외 에너지의존도를 낮추고 EU 역내 청정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 2020년 EU의 화석연료 에너지 수입규모가 역사적 저점인 1,630억 유로였던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연도인 2022년 6,040억 유로로 급등
    - ※ EU 기업들은 미국 기업 대비 2.2배, 중국의 2배, 일본의 1.2배에 달하는 에너지 가격을 지불하고 있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됨
- EU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높은 해외 에너지의존도 및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아래의 3대 KPI를 설정함
  - EU 내 친환경적, 디지털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2025년 한해 450억 유로 (한화 72조원), 2040년까지 연간 2,600억 유로(한화 410조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 ※ 이는 EU GDP의 1.2%에 해당하는 규모
  - EU 경제 전반의 전기화율(electrification rate)을 현재의 21.3%에서 2030년 32%로 확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매년 100GW씩 설치
- KPI 달성 전략 ①. 산업부문 전기요금 인하
  - 에너지집약 산업의 장기적 에너지가격 안정성을 보장해 줄 PPA(전력구매계약)를 활성화하여 에너지요금 인하 유도

- ※ 이를 위해 EU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EIB)이 공동으로 5억 유로 규모의 기업 PPA 시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으며, EIB가 에너지집약 산업의 PPA 일부를 간접보증
- 에너지세제지침(Energy Taxation Directive) 개편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여 EU 경제 전반의 에너지 전기화(electrification)를 유도하는 한편,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
- ※ 이는 에너지집약적 산업의 전기세율 인하가 주 목적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을 사용한 산업의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전기세율을 '0'으로 인하할 계획

○ KPI 달성 전략 ②. 청정에너지 및 청정제조 확산

- 전력, 그리드, 에너지저장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산을 위한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SMR 등 원전기술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성 평가
  - ※ 현재 EU 내 신규 풍력 프로젝트 허가는 7~10년, 배전 전력망 프로젝트 8~10년, 송전 전력망 프로젝트 허가는 17년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대량 확산과 프로젝트의 경제적 모델을 저해하고 있음
  -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평가 간소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 한편, EU 집행위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신규 원자력 에너지 기술 확산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성도 별도로 평가할 예정
- 금년 6월까지 청정산업딜 국가보조금 체계(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와 산업 탈탄소화 확산을 위한 국가보조금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원전 공급망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보조금도 평가할 예정
  - ※ 탄소중립 기술 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을 위해 저탄소 수소 사용 장비 또는 기계, 탄소포집 장비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저장 장비 분야에 보조금 지급
  - ※ 특이할 사항은, EU 회원국의 에너지믹스 결정권을 존중하여 원전 공급망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보조금도 EU 집행위에서 평가할 예정  
(스테판 세주르네 산업정책 담당 EU 부집행위원장(장관급)은 EU 회원국 다수가 원자력을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EU의 새로운 탈탄소화 전략에서 원자력이 간과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함)

○ KPI 달성 전략 ③. 천연가스 시장의 원활한 운영체계 개선

- 가스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여 해외 LNG 프로젝트 관련 대출에 혜택 지원 검토
  - ※ EU는 국경 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해 왔으며, 지속가능한 투자 대상에서 가스를 제한하였으나, 러시아에 대한 EU의 에너지 의존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해외 LNG 수입처 확보 필요성 제기됨
  - ※ 이에, 신뢰할 수 있는 LNG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현존 및 미래의 해외 LNG 프로젝트로부터 가격경쟁력이 있는 추가 수입처를 발굴함으로써 EU 구매업체들이

- 장기적 계약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LNG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ex. 투자자에게 우대 대출 제공, 장기 가스 계약 체결, 가스 액화권 확보 등)
- 천연가스 수입가격이 EU 가스 및 전기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Gas Market Task Force'를 올해 설립하여 EU 천연가스 시장의 가격조성을 왜곡하는 상관례를 예방하는 한편, EU 구매력을 활용하여 수입 천연가스 가격 인하

## □ EU에서 생산된 청정제품 수요 확대

### EU産 청정제품 수요 확대



KPI : (i) EU에서 생산된 청정제품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EU가 청정 제조 산업의 선도시장으로 부상  
 (ii) EU 시장에서 청정기술 제품의 EU産 핵심부품 비중을 40%로 확대



내용: '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 채택을 통해,  
 (i) 공공 및 민간 조달 기준에 'Sustainability', 'Resilience', 'Made in Europe'을 도입하여 비가격 조건 강화  
 (ii) '자발적 탄소집약도 라벨'을 도입하여 철강, 시멘트 등 산업 제품에 대한 탄소집약도 측정방법론 간소화 및 통일화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청정산업딜」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은 'EU에서 생산된 청정제품 수요 확대'이며, 이를 위해 '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산업 탈탄소화 촉진법)'을 채택하였음
- EU에서 생산된 청정제품 수요를 확대함으로써 EU가 청정 제조산업의 선도시장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아래의 KPI를 설정함
  - EU 시장에서 청정기술 제품의 EU産 핵심부품 비중을 40%로 확대
- KPI 달성 전략 ①. 공공 및 민간 조달 기준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회복력(Resilience)', 'EU産 우대(European Preference' 등 비가격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EU産 청정제품 수요를 확대하고, EU 기업의 역내 청정 공급 촉진
  - EU 집행위는 2026년까지 공공조달체계(Public Procurement Framework)를 개편하여 핵심기술이 포함된 전략산업의 공공 조달 시 EU 기업들에게 우선권 부여
  - 민간조달의 경우, 일반차량과 법인차량, 빌딩 코드 등에 지속가능한 전지, 저탄소 철강 등의 기준을 어떻게 도입할지 검토
  -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탄소포집 기술 사용을 인정하고, SMR 개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 위임법안을 통해 저탄소 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청정제품의 정의와 기준 확대



- KPI 달성 전략 ②. 자발적 탄소집약도 라벨(Voluntary Carbon Intensity Label)을 도입하여 올해 철강을 시작으로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산업 제품에 대한 탄소집약도 측정방법론을 간소화 및 통일화
  - 산업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나타내는 라벨링은 기업들에게 그린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에코디자인규정 등에 의거하여 정확한 탄소발자국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도입 예정
  - EU ETS(배출권거래제) 데이터의 단순 방법론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방법론에 근거하여 자발적 탄소집약도 라벨을 개발하고, 이는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의 탄소집약도 측정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 특히 현재 EU 및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탄소 측정방법론이 논의/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업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분기까지 탄소 측정방법론의 간소화 및 통일화, 그리고 명확한 검증 작업에 집중할 계획

□ EU 제조산업의 청정전환 지원을 위한 재정 동원

**EU 제조산업의 청정전환 지원을 위한 재정 동원**

 **KPI:** EU 제조산업의 청정전환(clean transition) 지원을 위해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 동원

 **내용:** (i) 기존의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강화하고 EU ETS 수익금 일부를 동원하여 1,000억 유로의 자금 조달  
(ii) investEU 규정을 개정하여 500억 유로의 민간 투자자금 추가 동원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청정산업딜」의 세 번째 핵심 정책은 EU 제조산업의 탈탄소화, 전기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의 재정을 동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아래의 KPI를 설정함
  - EU 청정 제조업 지원을 위해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 동원
- KPI 달성 전략 ①. 기존의 「유럽 그린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강화하고 EU 배출권거래제도인 ETS 수익금 일부를 동원하여, 새로 설립될 산업탈탄소화은행(Industrial Decarbonization Bank)를 통해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의 자금 조달 계획
  - ※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은 EU의 기후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유럽 그린딜 프로그램

- KPI 달성 전략 ②. InvestEU 규정을 개정하여 청정기술, 청정 모빌리티, 폐기물 감축 등에 500억 유로의 민간 투자자금 추가 동원

## □ 핵심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 강화

### 핵심원자재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 강화



KPI : (i) 순환적 자원 사용률(Circular Material Use Rate, CMU)을 현재의 11.8%에서 2030년 24%로 상향  
 (ii) 유럽 재제조 시장의 순환 잠재력 가치를 현재의 310억 유로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유로로 상향하고, 이를 통해 50만 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내용: (i) 2026년 신설될 'EU Critical Raw Material Centre'를 통해 기업을 대신하여 핵심원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가격 협상력 제고  
 (ii) 2026년 'New Circular Economy Act'를 채택하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청정산업딜」의 네 번째 핵심 정책은 EU의 탈탄소화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핵심원자재 등 주요 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아래의 KPI를 설정함
  - 순환적 자원 사용률(Circular Material Use Rate, CMU)을 현재의 11.8%에서 2030년 24%로 상향
  - 유럽 Remanufacturing 시장의 순환 잠재력 가치를 현재의 310억 유로(한화 50조원)에서 2030년까지 1,000억 유로(한화 160조원)로 상향하고, 이를 통해 50만 건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KPI 달성 전략 ①. 2026년 신설될 'EU Critical Raw Material Centre (EU 핵심원자재 센터)'를 통해 기업을 대신하여 핵심원자재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가격 협상력 제고
  -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이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
  - EU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을 대신하여 원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한편, 전략적 비축량 조율, 공급망 모니터링 등 추진
  - 핵심원자재법(CRMA)이 규정하고 있는 25% 재활용 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EU 역내 순환성 및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EU 집행위는 EU 내 핵심원자재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추가 조치 마련 예정
  - 또한, 제3국이 핵심원자재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구비하고 있는지 고려하고,

관세 등 수출수수료를 재활용 역량제고 투자 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KPI 달성 전략 ②. 2026년에 ‘New Circular Economy Act(신순환경제법)’을 채택하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비즈니스 기회 창출
  - 순환경제법은 순환형 제품,再生资源, 폐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고품질再生资源 공급을 촉진하며,再生资源와 순환형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도록 설계
  - 또한 기존의 전자폐기물(e-waste)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핵심원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 폐기물 종료기준(“end of waste” criteria)을 통일화하여 폐기물에서 가치있는再生资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의 간소화 및 디지털화 추진
  - 금속스크랩 사용 증대 및 건축물 철거허가서와 철거전단계 감사의 의무적 디지털화에 인센티브 부여
- KPI 달성 전략 ③. 유럽 배터리재활용 산업이 블랙매스 부족이라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매스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EU 집행위는 블랙매스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할 예정

## □ 글로벌 시장과 국제 파트너십

### 글로벌 시장과 국제 파트너십



KPI: 2035년 2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청정에너지기술 시장 선점



내용: (i) 제3국과의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런칭하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상호호혜적 거래 체결

(ii)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일부 전략적 산업에서 설비 소유권, EU産 부품 사용, EU 기반 인력 채용, 공동 투자 또는 지식재산권(IP) 이전 요구 조건을 검토하도록 유도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청정산업딜」의 다섯 번째 핵심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EU 산업의 청정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아래의 KPI를 설정함
  - 2035년 2조 달러(한화 2,948조원) 규모의 글로벌 청정에너지기술 시장 선점

- KPI 달성 전략 ①. 제3국과의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청정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을 런칭하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상호호혜적 거래 체결
  -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일부 전략적 산업에서 설비 소유권, EU產 부품 사용, EU 기반 인력 채용, 공동 투자 또는 지식재산권(IP) 이전 요구 조건을 검토하도록 유도
- KPI 달성 전략 ②. 외국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관련 지침을 통해 EU 진출 해외기업의 자국 내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엄격히 평가
  - 또한, 수입 관세 조정,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를 포함한 무역구제조치(TDIs)의 신속한 활용안 마련 등 광범위한 EU 역내 산업 보호 정책을 정비할 계획

### 3. 「옴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 주요 내용

#### □ 의미 및 기대효과

- 「청정산업딜」과 함께 발표된 「옴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Omnibus Packages)」은 ①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② 공급망 실사지침(CSDDD), ③ EU 탄소노미, ④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4개의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중복적, 불균형적 행정부담을 2029년까지 최소 25% 완화, 중소기업(SMEs)의 경우 최소 35% 경감하는 것이 목적임
  - 옴니버스 패키지는 여러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하나의 법령을 통해 함께 개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금번 1차 개정안을 시작으로 기타 규제 간소화 개정이 추가 공개될 예정
- 이번 「옴니버스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와 공급망 실사 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기업 대상을 기후·환경 영향이 큰 대기업 위주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보고 및 실사 요건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 핵심임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경우 기존 적용대상 기업에서 약 80%가 제외됐으며(대다수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또한 전체 대상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수입업자의 세금 면제
  - CSRD의 보고 의무 첫 적용 시점을 2년 연기, 공급망 실사의 실사 의무 첫 적용 시점을 1년 연기하는 한편, 보고 항목(Data Point) 축소 및 실사 주기 연장
- 「옴니버스 개정안」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도입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규제대응 행정비용을 연간 60억 유로 (한화 9조 5천억원)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EU 집행위는 기대하고 있음

##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개정안

### 규제간소화 주요 내용



#### (공시 의무 대상기업 축소)

(i) EU 기업: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대기업, 즉 직원 수 1,000명을 초과하면서, 연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초과하는 기업에만 공시 의무 적용

(ii) 非EU 기업: EU 내 연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하는 기업에만 공시 의무 적용

(공시 첫 적용시점 연기) 기존에 2026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시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첫 보고 의무를 2028년부터 적용, 즉 최대 2년 늦추도록 개정

(공시 요건 간소화) 공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들(직원 1000명 이하)을 위한 자발적 보고 표준(VSME)을 별도로 마련하여, 대기업이 가치사슬 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제한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목적
  - EU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EU 및 非EU 기업이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표준(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 활동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2023.1월 발효되었으며, 올해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보고 의무를 적용 받고 있음
- (공시 의무 대상기업 축소) 이번 「옴니버스 개정안」은 기존의 CSRD 공시 의무 대상기업에서 약 80%를 제외시킴 (대다수 중소기업이 제외대상)
  - EU 기업: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대기업, 즉 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면서, 연 매출이 5,000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이 2,500만 유로 초과하는 기업에만 공시 의무 적용토록 개정
  - 非EU 기업: EU 내 연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하는 기업에만 공시 의무 적용토록 개정

<b>[참고] 현행 공시 의무 적용대상 (개정 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기업: 모든 대기업(연매출 5,000만 유로,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직원 수 250명 이상 중 2개 이상 해당 기업)과 EU 규제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SMEs),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모기업</li> <li>· 非EU 기업: EU 내 연 매출 1억 5,000만 유로 초과하는 기업</li> </ul>
--	---

- (공시 첫 적용시점 연기) 기존에 2026년 첫 공시 의무가 있을 예정이었던 기업(직원 500명 초과 비상장 EU 대기업, 500명 미만 EU 대기업)과 2027년 첫 공시 의무가 있을 예정이었던 기업(EU 규제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첫 공시 의무를 2028년부터 적용, 즉 최대 2년 늦추도록 개정
  - 2028년으로 공시 적용시점을 유예한 이유는, 「옴니버스 개정안」이 향후 확정될 경우 기존에 2026년, 2027년 첫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상당수가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따라서 2년 유예를 통해 이들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 (공시 요건 간소화) CSRD 적용 대상기업의 공시 간소화 및 비적용 기업의 자발적 공시 기준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정보공개 데이터 규모를 상당량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

<p>중소기업(SMEs)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자발적 보고 표준(VSME)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에 따라 공시 의무대상이 아닌 기업들(직원 1,000명 이하)을 위한 자발적 보고 표준(VSME)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개정</li> <li>· CSRD 적용 대상 대기업이 가치사슬 내 협력사들에게 정보를 요청할 경우, VSME에서 정한 표준 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미연에 방지</li> </ul>
<p>산업별 공시 표준 미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산업별 공시 표준(sector-specific standards)은 도입하지 않고, 공통 기준 및 주제별 공시만 유지하도록 개정</li> </ul>
<p>인증 기준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자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만을 유지하고,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으로의 전환은 폐지</li> </ul>

- (이중 중대성 원칙 유지) 이번 「옴니버스 개정안」은 ‘이중 중대성 원칙(double materiality perspective)’은 그대로 유지함
  - 즉, 기존대로 CSRD 적용 기업은 지속가능성 리스크가 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자사 활동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모두 보고해야 함

## □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

### 규제간소화 주요 내용

(실사 의무 적용시점 연기) 직원 5,000명 이상이며, 연간 전세계 순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초대형 기업의 첫 실사 의무 적용시점을 기존의 2027년 7월 26일에서 1년 연기하여 2028년 7월 26일로 개정  
 ※ EU 내 연간 순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非EU 기업도 이에 해당

(실사 요건 간소화) 실사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주기를 연 1회 평가에서 5년에 1회 평가로 완화; 공급망 심층평가는 원칙적으로 회사, 자회사 및 직접 협력업체 대상으로만 실시; 협력사(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발적 공시표준(VSME) 적용

(EU 회원국 제재 권한) 기존의 벌금 최대 한도인 ‘전세계 순매출액의 5%’ 관련 문구 삭제하고, 추후 벌금 부과 수준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목적
  - 자사, 자회사 및 활동사슬상 모든 협력업체의 활동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규정한 지침으로, 2024.7월 발효되었음
- (실사 의무 적용시점 연기) 이번 「온니버스 개정안」은 직원 5,000명 이상이며, 연간 전세계 순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초대형 기업의 첫 실사 의무 적용시점을 기존의 2027년 7월 26일에서 2028년 7월 26일로 1년 연기함
  - EU 내 연간 순 매출이 15억 유로 이상인 非EU 기업도 2028년 7월 26일부터 첫 실사 의무 적용
  - 직원 3,000명 이상이며 연간 전세계 순 매출이 9억 유로 이상인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2028년 7월 26일부터 적용
  - 2029년 7월 26일부터는 그 외 모든 대상 기업에 적용
- 실사 요건 간소화

모니터링 주기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사 조치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주기를 기존 연 1회 평가에서 5년에 1회로 완화함으로써 대기기업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li> <li>· 단, 기존 실사 조치가 적합 혹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추가적 모니터링 평가 실시</li> </ul>
공급망 심층평가 (in-depth assessment) 범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에는 직접 협력업체와 간접 협력업체(indirect business partners) 모두를 포함한 공급망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직접 계약을 맺은 1차 공급업체에 대해서만 심층평가를 하도록 함</li> <li>· 다만 간접 협력업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확보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li> </ul>
중소기업(SMEs)의 자발적 보고 표준(VS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기업이 가치사슬 내 협력사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표준(VSME)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 가능</li> </ul>
계약 해지 의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후 수단으로 협력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무 규정 삭제</li> </ul>

- (민사책임) 기존에 규정된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EU 회원국이 국가법으로 민사책임 적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 (EU 회원국의 제재 권한) 기존의 벌금 최대 한도인 ‘전세계 순매출액의 5%’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추후 벌금 부과 수준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 □ EU 택소노미(EU Taxonomy) 개정안

### 규제간소화 주요 내용



(보고 대상 기업 축소) 직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으로 CSRD 적용대상 이면서 연간 순 매출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들만 EU 택소노미 요구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대상 기업 수 축소

(보고 요건 간소화) 보고 서식을 간소화하여 데이터 입력 항목을 70% 축소; 사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제활동이 아닌 경우 택소노미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 의무 면제; 화학물질 '오염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중대 피해 유발 방지(DNSH)' 판단기준 간소화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EU 택소노미(EU Taxonomy) 목적
  - 녹색산업 분류체계로, 어떤 산업활동이나 기술이 친환경·녹색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됨
  - 2025년 현재 CSRD 보고의무 대상 EU 대기업은 EU 택소노미의 적합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非EU 기업에 대해서는 2029년부터 적용됨
- (보고 대상 기업 축소) 이번 「옴니버스 개정안」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으로 CSRD 적용대상이면서 연간 순 매출이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들만 EU 택소노미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4.5억 유로 이하인 기업들은 보고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EU 택소노미의 요구사항을 일부만 달성한 경우 택소노미와의 적합성과 연계된 해당 정보에 국한하여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고 표준을 EU 집행위가 조만간 제시할 예정
- 보고 요건 간소화
  - 보고 서식(Template)을 간소화하여 데이터 입력 항목을 70% 축소
  - 사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제활동이 아닌 경우(ex. 총 매출, 자본지출 CAPEX, 혹은 총 자산의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택소노미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무 면제
  - 화학물질 '오염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중대 피해 유발 금지(Do No Significant Harm, DNSH) 판단기준 간소화

※ 추후 DNSH의 다른 분야 기준도 점차적으로 개정 및 간소화할 예정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 규제간소화 주요 내용

(적용대상 기업 축소)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는 세금 면제

(적용 분야 확대) CBAM 적용 분야를 기존의 6개 부문에서 향후 다운스트림 제품, EU 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기타 산업, 간접배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을 2026년 초까지 마련

(보고 요건 간소화) 제품내재배출량 산정 및 보고 요건 간소화, 신고자 허가 및 재정책임 의무 등 간소화



※ 출처: EU 집행위, KBCSD 요약·편집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목적
  - EU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탄소집약 품목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입하는 관세 제도
- (적용대상 기업 축소) 이번 「온니버스 개정안」은 연간 50t 이하의 CBAM 적용 품목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에 대해 세금 면제
  - 기존 CBAM 대상은 150 유로가 넘는 수입품, 즉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었던 반면, 개정안은 ‘질량’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탄소의 평균 배출 강도를 더 정확히 반영
  -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 대상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수입업자가 CBAM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여전히 CBAM 적용 품목의 전체 배출량 99%가 개정안의 CBAM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고유 목적을 저해하지 않음
- (적용 분야 확대) CBAM 적용 분야를 기존의 6개 품목(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에서 향후 다운스트림 제품, EU 배출권거래제(ETS)에 포함된 기타 산업, 간접배출 등으로 점차 확대
  - 철강, 알루미늄을 다량 사용하는 일부 제품군 포함 등 CBAM 적용 분야 확대에 대한 새로운 입법안을 2026년 초까지 마련
- 보고 요건 간소화
  - CBAM 적용 제품 내재배출량 산정 및 보고 요건 간소화
  - CBAM 적용 수입업자의 신고자 허가(authorization of declarants), 재정책임(financial liability) 의무 등 간소화
- CBAM 개정 세부내용은 EU 집행위가 2026년 초에 CBAM 간소화 개정안을 제안 예정

## 4. 국내 시사점

### □ 「청정산업딜」 : 후속 발표될 EU 업종별 산업계획의 나침반 역할

- 향후 5년간 EU를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 EU 집행위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산업정책을 규명한 핵심 로드맵인 「청정산업딜」은 산업별 청정전환 경로를 수립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발표될 업종별 행동계획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함
- 지난 3월 발표된 「유럽 자동차 산업 행동계획(Action Plan for an Automotive Sector)」과 「철강·금속 산업 행동계획(Action Plan for Steel and Metals)」은 「청정산업딜」의 핵심 기조인 규제간소화, 에너지 비용 절감, EU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무역조치 등을 포함
  - Ex)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세이프가드 조치 강화
  - Ex) 외국인 투자가 EU 산업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작투자, 지재권, 핵심원자재 공급 약정 등 조건 부여
- 연내 발표될 「화학산업 패키지(Chemicals Industry Package)」, 「지속가능한 수송투자계획(Sustainable Transport Investment Plan)」 또한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EU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기술’의 범위 확대

- 「청정산업딜」을 통해 채택된 ‘저렴한 에너지를 위한 행동계획(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에서 EU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해외 LNG 프로젝트 대출 혜택, 원자력 공급망의 국가보조금 대상 평가,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전기술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EU가 기존의 탈탄소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집약 산업인 EU 제조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비용 저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LNG 인프라, 원전, SMR 등을 핵심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EU産 청정제품에 탄소포집 기술 사용을 인정하고 SMR 개발을 지원하며, 저탄소 수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위임법안을 조만간 채택한다는 것은, 청정에너지·기술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청정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부문에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됨

## □ 국내 제조업의 산업경쟁력과 녹색전환의 양립이 가능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성장전략 필요성

-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기존 제조업 강국들의 최근 산업전략의 공통점은 자국 산업에서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및 구조적 전환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EU	· 미국,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청정산업딜」이라는 구체적인 산업 액션플랜을 통해 EU산 제조를 촉진하고 제조산업 공급망 전반에 규제 간소화를 적용하여 유럽이 청정산업 선도주자가 되는 것이 목적
미국	·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등 적극적 관세 조치를 통해 제조업 부흥 정책 강화 ·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미국 탄소 관세부과 정책인 CCA(청정경쟁법)은 미국 제조업 배출집약도가 전세계 평균보다 낮아 자국 제조업에 유리하게 설계됨
일본	· 탈탄소,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경제성장 등 3대 목표 실현을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정책 강화
중국	· 2024년 중국 제조업의 기술변혁과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 투자를 9.2% 증가시켰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태양광, 2차전지 분야에 대규모 선제적 투자 진행중 · 지난 3월 개최된 양회에서 공개된 「2025년 정부 업무보고서」에서 기업 혁신 유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로봇, AI 등 첨단 제조분야에서 매우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 전세계적으로 AI 등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국 제조업의 새로운 원동력을 청정산업 육성에서 찾으려는 주요 경제국들의 성장전략은 국내 제조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성장정책 필요성에 시사하는 바가 큼
  - 한국은 국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28.2%인 중국 다음으로 높지만, 에너지의 93%를 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산업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방안이 부재한바, 제조업 부문의 산업경쟁력과 녹색 산업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마련이 시급함
- 미국, EU 등이 전략적 성장산업이자 청정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동시에, 국내 산업이 비교 우위를 갖추고 있는 원전 및 SMR 밸류체인, LNG 산업인프라, 차세대 배터리/ESS, 스마트 전력망 등 첨단 제조산업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전략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환경규제와 자국중심 제조부흥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특히 이들 전략산업의 녹색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R&D 지원과 더불어 기업 혁신을 유도할 규제 합리화 및 자율성 부여,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EU 「청정산업딜」, 미국의 제조업 재건 정책이 자국 산업 보호 욕구에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으나, 자국 제조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제조업의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역통상 전략과 외교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이 직면한 글로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임

## □ 「옴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에 따른 국내 대응전략

- 「청정산업딜」과 함께 발표된 「옴니버스 규제 간소화 개정안」이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및 공급망 실사 요건의 간소화와 불필요한 중복성의 완화에 따라 EU 공급망에 편입된 국내기업들의 규제대응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재무 및 영향 중요성을 모두 강조한 ‘이중 중대성 원칙(double materiality perspective)’을 그대로 유지하고, 간접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경우 기존대로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예외규정을 포함하는 등 EU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초와 방향이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아님
  - 특히 기후공시의 경우 EU뿐만 아니라 미국 주정부,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에서 공시 의무화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콜로라도주가 기후공시 의무화 법을 제정 혹은 발의함에 따라 미국 대기업 90%가 실질적으로 공시 의무화 제도권에 포함됨
  -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이니셔티브인 RE100 가입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4월 현재 443개 기업이 Member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70여개 기업이 이미 재생에너지 100% 목표 既달성
-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점차 강화되는 자율적 규범과 더불어 EU의 이번 규제 간소화 개정안을 계기로, 지속가능성 이슈를 단순한 규제 대응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장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혁신적 기술·설비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 가격 우위 확보가 중요

## □ KBCSD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대응 심포지움」

- KBCSD는 오는 6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대응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 및 국제표준의 새로운 질서에 국내 산업계가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당사국-국제표준기관-산업계 정보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임
  - 특히 KBCSD 회원사가 전세계적인 제품환경규제 강화에 선 대응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탈탄소, 순환형 제품 생산방식 전환에 필요한 공급망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전략을 정부, 글로벌 우수기업, WBCSD 전문가 등과 함께 모색할 계획임